

의안번호	제 223 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3월 일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국기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3
----------	-----

발의연월일 : 2023년 3월 일
발 의 자 : 김국기 의원

1.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 및 경제성 미달 농어촌지역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촌 주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지원내용 및 지원 대상 선정 등(안 제5조 및 안 제6조)
- 사업 위탁 및 안전관리(안 제7조 및 안 제8조)
- 협약체결 및 지도·감독 등(안 제9조 및 안 제10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3. 3.
- 협 의 :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에너지과
- 비용추계 : 붙임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 및 경제성 미달 농어촌지역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써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말한다.
5.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의 농어촌지역(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
2. 배분기준 및 수요조사 기준
3. 지원 대상 농어촌지역
4.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 우선 적용 방안
5.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도지사는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에 예산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또는 설계비·감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의 선정 등) ① 시장·군수는 관할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의 필요성, 사업의 추진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및 해당 농어촌지역 주민의 사업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 이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이나 사업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관리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관리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관련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시설·기술기준 및 상세기준 등이 적합하게 시공 및 관리 상황 등을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약체결) 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및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 사업 및 안전관리 체계 조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체계 구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0.>

□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 ① 시·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가스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3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충청북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지역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공급 시설 설치·지원을 통한 농어촌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으로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및 에너지복지 실현

2. 비용발생 요인

-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3. 관련조문

- 안 제5조(지원)
- 안 제7조(사업의 위탁)
- 안 제8조(안전관리)

4. 비용추계 결과

○ 추계의 전제

- 재정수반요인 :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관한 소요예산
- 추 계 기 간 : 2023년부터 2027년부터 5년간으로 함

○ 추계결과 : 136억원(국 30 도비 45.2, 시군 47.2, 자부담 13.6)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 15개소 × 4억원 = 60억원
(국 30, 도 7.2 시군 16.8 자부담 6)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자체) : 19개소 × 4억원 = 76억원
(도 38시군 30.4 자부담 7.6)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5. 연도별 비용추계표 (세출)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13,600,000	2,400,000	2,800,000	2,800,000	2,800,000	2,800,000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6,0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자체)	7,600,000	1,2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1,600,000

